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유림을 장기간 사용함에도, 낮은 사용료만 부과하는 현행 국유림 이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독점적 사용 시 심의를 거쳐 기간 갱신 여부를 검토토록 하고, 최초년도에는 대부료등이 인상되더라도 조정하지 않도록 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장기간(30년) 사용 국유림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간 갱신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(안 제2조의2제1항1의3호, 안 19조제3항 신설)

- 갱신하고자 하는 기간을 포함한 대부등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
- 다만, 타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 없이 갱신

나. 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갱신 최초년도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하지 않도록 개선(안 제24조제2항 개정)

- 산정한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9%까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조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,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

는 조정에서 제외하여 9%를 초과하여 현실화된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(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호나목 준용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부등의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

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총 기간(갱신을 받기 위해 신청한 기간을 포함한다)이 3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 전에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종전에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대부등의 총 기간은 제외하고 기산한다.

제24조제2항 본문 중 “한다”를 “한다.(대부등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적용례)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 및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부터 적용하며, 제19조제3항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 영 시행 이전 기간까지 포함한다.

제3조(국유림 대부료등의 적용례)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(계약기간 중 다음 연도의 대부료를 부과·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(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·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2조의2(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1의2. (생략)	1. 1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의3.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부 등의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) ①·② (생략)	제19조(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총 기간(갱신을 받기 위해 신청한 기간을 포함한다)이 3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 전에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종전에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대부등의 총 기간은 제외하고 기산한다.</u>

③ (생 략) 제24조(대부료등의 조정) ① (생 략)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 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<u>한다</u>. 다만,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.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24조(대부료등의 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 <u>한다.(대부등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)</u> ---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국유림경영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098